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09.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18. 9. 13. ~ 2018. 10. 05.(15일 이상)
3. 대상자(송달)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내용	반송 사유
		대지위치	구조	용도	면적 (㎡)		
1	김상진	운서동2833-3 (유진낙시)	천막/파이프	소매점	27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2	유기성	을왕동179-66 (구 돌무개 여관)	판넬조	주택	253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3	김윤조	운북동 1053	컨테이너	창고	22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4	김성경	덕교동 676-4	판넬조	샤워장	40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위반	수취인불명
5	황정길	운서동 2854-4 (현대낙시)	철파이프조	소매점	53.2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위반	폐문부재
6	김종진	을왕동 206-28	판넬	음식점	25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비고
김상진 외 5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2018. 8. 16.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53:신준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